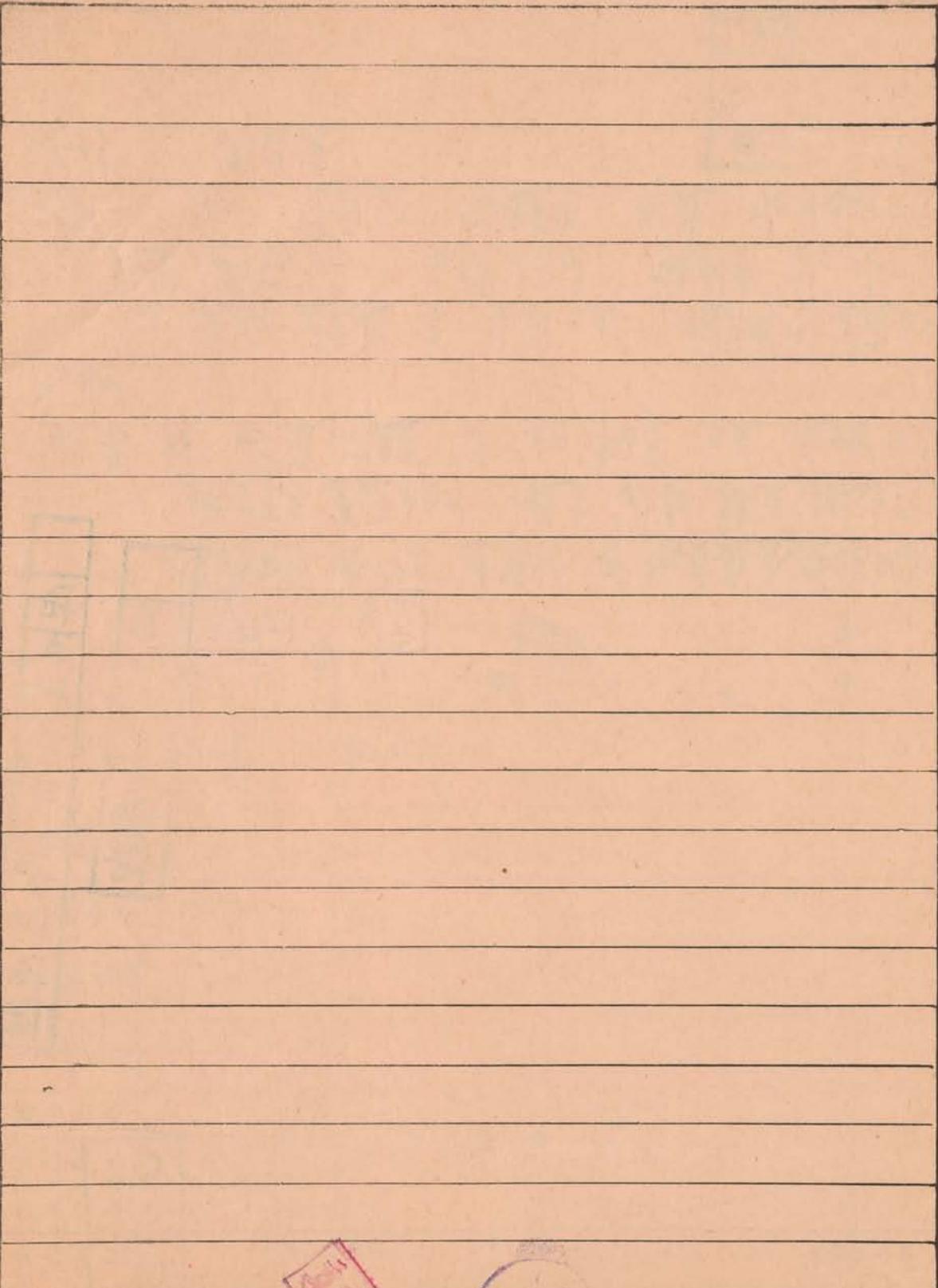


분류기호	111819	기안용지	전결규정	조항	
문서번호		(전화번호)	307	장전결사항	
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11장
시행일자	50	기안자 서명	3 경은	결재	
보존년한		기안 일자	67. 1. 17	결재일자	
<p>제1부시장 첨부파일 내무과 법무과 기획과 총무과 조례과 내무과장 총무과장 경찰국 우편국 주월일 목록 제127호 特許建築物無許万建築物委員會規程制定 1. 無許万建築物의 撤去社制樹立撤去民 의 定善以 故障問題를 効率的 으로 处理하기 為하여 2. 關係課長을 委員으로 組織한 委員會 를 設置運營하기 有機的으 協助을 갖고자 別案斗 갈. 委員會 規程을 制定 하자하나 添付 制定案 인수 1월 1일 서울특별시 0087         </p>					



0088

0088

0089

행정처

226(회)

(令案)

서울특별시회령 226号

企劃管理官  
內務局  
財務局  
都市計劃局  
運送局  
水道局  
保健社會局  
觀光運輸局

서울특별市 無許可建築物 対策委員會 規程  
서울특별市長 金玄三

1967年 1月 27日  
서울특별市長 金玄三

서울특별市無許可建築物对策委員會規程

方針 (目的) 無許可建築物의 総合的 撤去  
方針은 方議하여 工効率의in 处理方案은

서울특별시 0089 0088

市長에게建議 하기 위해 特別市  
無許可建築物 汎用委員會 (以下 委員회라)

方條(職務) ① 委員會의 任務事項

管掌부

1. 無許可建築物의 集団撤去計劃의 実地事項

2. 撤去民의 慈善 对策의 実地事項

3. 撤去民救援의 実地事項

4. 其他 委員會의 目的 달성을 하기 위한  
必要的 事項

方條(組織) ① 委員會의 委員長은 市  
都市計劃局長이 되다.

② 委員은 企劃官,予算課長,管財課長  
建築課長,社會課長,保健課長,管理課長

0005

0005



1487-127  
1. ① 會員會 會議之委員  
運輸行政課長 施設課長 이진우  
才4條 (召集及審議)

長이 召集 및 會議長 이진우

② 會議之 委員過半數 이出席으로 計議

이出席委員 過半數 이 賛成으로 決定한다  
才5條 (建議) 委員會 이의 審議決定한다

事項이 市長에게 提議하여 한다  
才6條 (幹事及書記) ① 委員會의 事務를 处理

하여 幹事及 書記를 한다

② 幹事는 建築課 建築行政係長이 되고  
書記는 建築課 職員中에서 部長이 命ぜ되

才7條 (施行細則) 委員會 運營의 実际上 必要한  
事項이 委員會 議決의 基本은 委員長이 是한다

서울특별시  
0091-74 - 0090

1800

1801

附則

이 之 1967年 2月 1日 부터施行한자

0092

~~0091~~

2006. 1. 27.  
서울특별시

(제 2안)

수신  
제목  
수신처참조  
동 길

발신 시장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을 대책위원회  
규정을 벌침과 같이 징거문으로 종지함  
첨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을 대책위원회 규정은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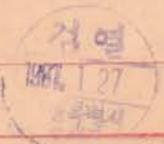
수신처 시장 1~5 시장 1~45 시장 1~9  
의회 1~13.

(제 3안)

수신  
제목  
공보실장  
동 길

발신 경무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을 대책위원회 규정을  
벌침과 같이 징거문으로 시로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을 대책위원회 규정은  
1부 끝.



서울특별시  
0093 15 - 0092

서 울 특 별 시

서도건 2054.5.1-28

67, 1, 11

수신 기획관리실장

제목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 위원회 설치

1. 무허가 건물 철거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철거 후 정착 문제를 위치한 제반 사후 대책을 관계국과 사이에 협조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으로 집행되게 하기 위하여 철거에 앞서 제반 문제를 심의검토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고자 합니다.

2. 본 위원회의 기능을 별첨안과 같이 시장 훈령으로서 제정고자 하오니, 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국 장



0094  
0093  
76  
영  
일  
5.1.11  
백

浑  
령  
안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수도국장

보건사회국장

관광문화국장

구청장

동장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 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67 , , ,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 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 자문에 응하여 도시계획 또는 건축통제상 정리 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신중하며 효과있게 추진하여 정착 대책으로 서의 종합시책이 협조적이며 능률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문제를 심의한다.

제 2 조(임무) (1)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철거 종합 계획의 검토.
2. 부분적인 철거 계획의 검토
3. 철거된 정착대책에 관한 사항.

0095

77

0094

4. 정착 후 구호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 전향 십의 대상 철거률은 적어도 50동 이상의 집단 철거라야 한다.

제 3 조(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시  
계획국 건축과장으로 한다.

도시계획국건축과장

내두국 예산과장

보건사 회국사 회과장

" 보건과장

건설국 관리과장

수도국 업무과장

관광운수국 운수과장

(2) 위원회에 간자와 서기를 두 외 간사는 건축과 건축행정과장, 서기는  
철거 담당자로 한다.

제 4 조(위원회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과 반수의 참석  
으로 심의한다.

제 5 조(위임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방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096

18

~~0095~~